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123

발의연월일: 2024. 12. 31.

발 의 자 : 윤영석·김태호·조경태

박덕흠 • 곽규택 • 이인선

최형두・구자근・서범수

김상욱 · 최보윤 · 김도읍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쪽방밀집 지역을 포함한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고 있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주거재생혁신지구 등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특정한 정책의 목적을위하여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쪽방밀집 지역을 포함한 공공주 택사업은 도심 내 쪽방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함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 원주민의 분양가가 일반 분양분 분양가보다 높아지는 이른바 '분양 가 역전 현상' 등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의 분담금이 증가하여 해당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쪽방밀집지역을 포함한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일률적인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아니라 공공에서 분양가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공공의 지원이 절실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7조제2항제7호 신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공공주택지구사업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제57조(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 제57조(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 | |
| ① (생 략) | ① (현행과 같음) | |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 2 | | |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 | | | |
| 니한다. | | |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 |
| <u><신 설></u> | 7.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 | |
| | 공공주택지구사업에서 건설・ | | |
| | 공급하는 주택 | | |
| ③ ~ ⑦ (생 략) | ③ ~ ⑦ (현행과 같음) | | |